

산학협력단 부설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<제정 2007. 03. 01.>, <1차 개정 2014. 12. 01.>, <2차 개정 2024. 01. 09.>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7조 및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 정관 제8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하부조직 중 사무국을 제외한 하부조직 (이하 “조직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 설치되는 조직에 적용한다.

제 3 조(구분) ①조직은 일반조직, 특별조직, 기획단으로 구분한다.

②“일반조직”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조직을 지칭하며, 센터, 사업단, 연구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밑에 별도의 팀을 둘 수 있다.

③“특별조직”이라 함은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설립하는 조직을 지칭하며, 명칭은 위탁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

④“기획단”은 산학협력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조직을 지칭한다.

제 4 조(설치신청) ①일반조직 및 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교원(비전임교원 포함)5인 이상의 공동발의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설립목적
2. 규정(안)
3. 사업계획 및 재정확보계획
4. 시설, 공간, 인력 확보계획
5. 참여 전임교원 및 연구원 명단

②제1항 제2호의 규정(안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

1. 명칭
2. 목적
3. 사업에 관한 사항
4. 조직에 관한 사항
5. 재정에 관한 사항

6. 해산에 관한 사항

③특별조직의 설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탁기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로 대치할 수 있다.

제 5 조(설치승인) ①조직 설치여부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.

②단 특별조직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6 조(조직의 장) 조직의 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한다.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7 조(연구원) ①조직의 장은 조직설립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“연구원 임용 규정”에 따르나, 자격은 가급적 해당 전공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하며, 조직의 장의 추천으로 단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.

제 8 조(운영재정) ①모든 조직의 운영재정은 외부기관 수탁연구 및 수탁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일반조직 및 기획단의 운영재정은 산학협력단에서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지원금액과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.

③산학협력단은 필요에 따라 공간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9 조(행정지원) 행정지원은 조직의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사무국의 지원을 포함한다.

제 10 조(간접경비) 모든 조직은 사업 수탁시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계상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학협력단에 전입한다.

제 11 조(조직의 소재지) 모든 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 둔다.

제 12 조(사업보고) ①일반조직 및 기획단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사업실적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
2. 사업비 수혜현황
3. 지원재정 사용내역
4. 기타 사업 결과 등

②일반조직 및 기획단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전 1개월 이내에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특정조직의 장은 수행사업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수행 실적 보고서

및 사업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회계연도) 모든 조직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 14 조(평가) ①조직의 장은 매년마다 사업실적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단장은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상태(연구기관의 기능, 연구분야, 연구실적·학술활동, 재정능력 등)를 평가한다.

제 15 조(통합 및 해산) ①특별조직은 수행사업의 계약기간 동안만 설치 운영하며 조직의 사업 종료 후 추가 사업의 수행이 없을 경우 단장은 총장의 승인하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②제14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조직의 운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반조직 및 기획단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유사 조직과의 통합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③조직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조직의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설치승인을 얻은 조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